

쉽게 풀리지 않는 의료분쟁, 사고감정은 **공정하게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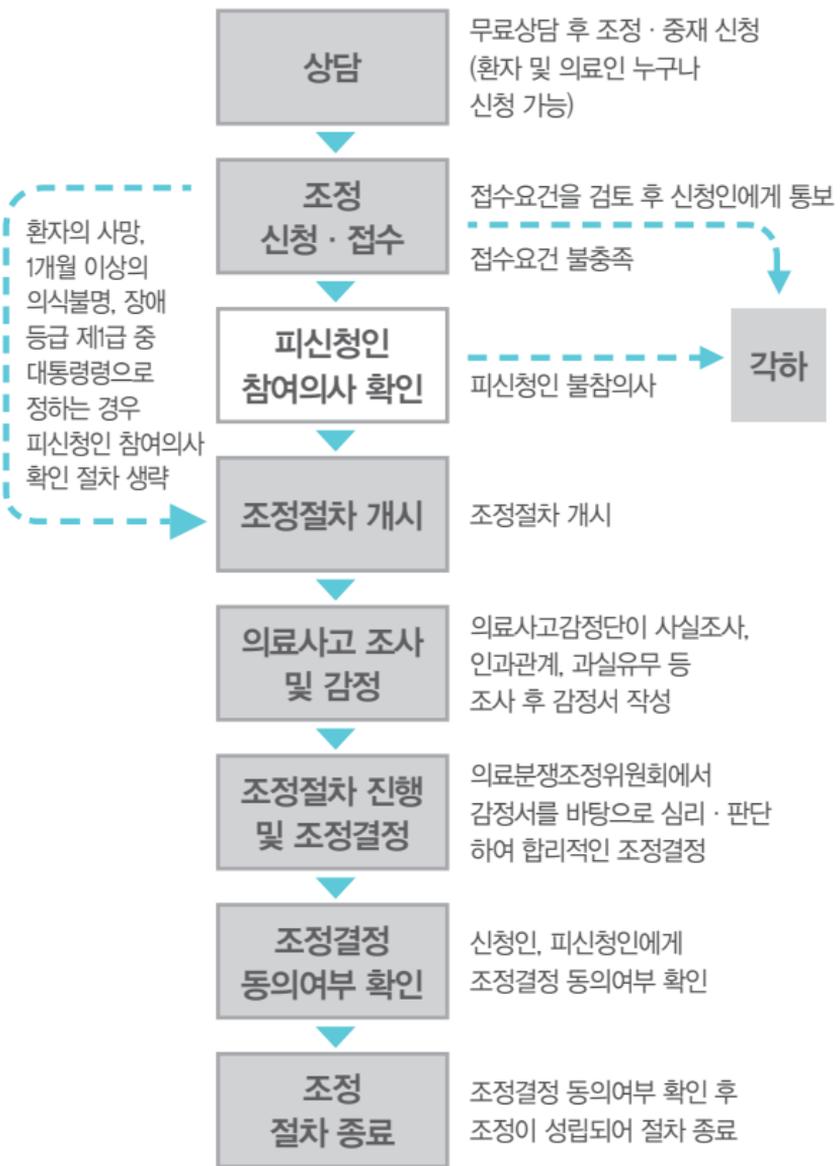
의료분쟁조정법, 이렇게 개정 되었습니다.

[조정 신청] 환자의 사망,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인해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

[조정 개시]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

[시행 일자] 2016년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.

의료분쟁 조정 · 중재 절차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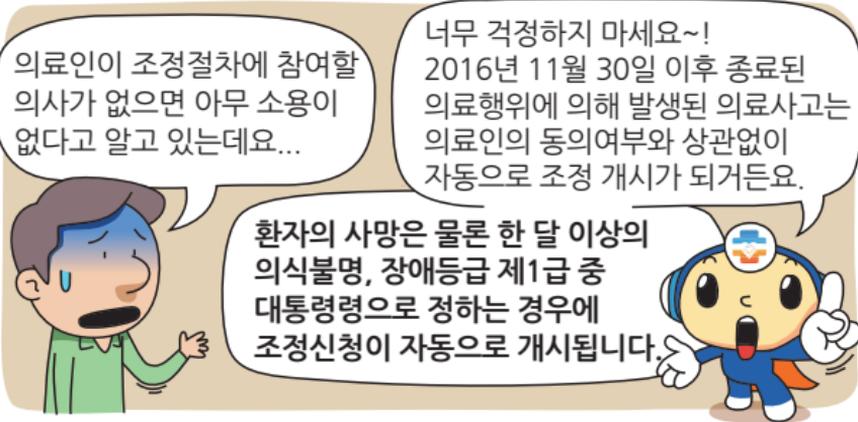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18층(상담센터)

Tel. 1670-2545 Fax. 02-6210-0199 www.k-medi.or.kr

새롭게 바뀐 의료분쟁조정법 분쟁조정은 신속하게!

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은

사망,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,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
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하여 환자 및
보건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

보건복지부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